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 계약이 해지돼 하청사가 손해를 봤을 때, 원청사는 '책임 있는 만큼만'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기에 대한 원청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하청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해준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이다. 최근 '을'을 보호하고자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정부 차원의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갑'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는 점은 건설업계가 주목할 부분이다.



시공  
‘시범’

국토부, I

건설산업  
력 강화를  
risk'과 '순  
비를 갖췄다  
국토교통  
K-water  
설공단 등  
시공책임화  
적용한 사례  
~2건씩 발  
시공책은  
부터 참여  
계에 미리  
와 협의한  
Maximum  
수행하는  
크를 찾지  
초과와 공  
현행 '설계  
기 위해 도  
미국 등  
에서도 일  
만 공공공  
미국에선  
가 2009년  
주로 늘었  
시공책임화  
균 약 30%

1면서계

### 하도급 계약해지로 하청업체 손해 발생시

## “원청사, 책임있는 부분만 배상”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며 청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원청사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청사, 미설치 부대시설 비용도 청구**  
지난 2012년 4월, 종합건설업체인 D사는 조경 전문업체인 P사에 '조경 및 정자 등 시설물'과 '포장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 업체는 전체 공사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공사가 정지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맺었다.

공기는 2012년 4월 3일부터 7월 19일 까지 약 100여일이었다.

P사는 약속한 공기를 맞출 수 없었다. 조경공사에 필요한 기반조성 공사 같은 '선행공정'을 다른 하청사들이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P사는 애초에 약정했던 대로 계약을 해지했다.

약정해지 사유에 명시한 대로 전체 공사기간의 절반이 넘어가도록 공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사가 늦어지며 장마가 닥쳐

### 원청사 잘잘못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 인정한 원심 대법원, 파기환송

조경공사의 하자 위험이 커진 데다, 인원과 장비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져 원가 상승 우려도 생겼다.

원심은 P사의 약정해지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액이었다.

P사는 현장에 실제 투입된 비용인 1100여만원이다. 추후 현장에 설치하려고 제작해 놓은 부대시설(그네 등 놀이기구)에 대한 비용 5000여만원도 청구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원심은 "P사가 공사를 위해 설계도서 규격에 맞춰 원자재를 절단·가공한 시설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D사가 배상할 손해에 포함했다.

#### 대법원, 약정해지권은 인정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계약의 내용이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면서 "하도급 계약조건 상 '약정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책임을 진다고 해석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쌍방책임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정지 기간이 길어져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당사자의 의사가 그에 합치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하청사들의 선행공정이 늦어진 건 원청사인 D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봤고, 이 때문에 P사가 입은 손해액에 대한 D사의 부담 비율도 이런 정황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무리 약정사항을 어겨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적어도' 원청사의 잘잘못은 따져봐야 한다는 법리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벌인 이창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재판장에서 하도급 관련 분쟁을 '갑-을' 관계로 보는 시선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갑이 역차별당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법원이 책임있는 만큼만 책임진다는 손해배상 기본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 5~7월 하남미사아파트 등 8만575가구 ‘집들이’

오는 5~7월 전국의 입주예정 아파트는 8만575가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주민이 입주하는 아파트는 서울(4613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이 3만8971가구, 지방이

이 입주하고 6월에는 인천용현(3971가구), 위례신도시(2568가구) 등 1만7430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7월에는 안양관양(1459가구), 하남미사(3055가구) 등 1만4368가구가 주인을 맞이한다.

혁신(1091가구) 등 1만2354가구, 7월 대전 관저5(1401가구), 석문국가산단(1191가구) 등 1만2891가구다.

규모별 5~7월 입주예정물량은 60㎡ 이하가 2만9554가구, 60㎡ 초과~85㎡가 4만3072가구, 85㎡ 초과가 7949가구로 중 소형인 85㎡ 이하가 전체의 90.1%였다.

2종 환기  
기를 주입  
기는 시스  
동해 자연  
공기를 빼  
환기설  
주방과 회  
와 증기밸  
문에 아파  
기 주입이  
스템"이라  
파트가 1층  
에, 3종을  
들뿐"이라